

2018귀속 미환류소득 작성 예시

<사례1>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발생(법인세법)+ 2018년 미환류소득 발생(조특법)

(case1) 2017차기환류적립금 600,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,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300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㉑	-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㉒	-
미환류소득		㉔		㉓	300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㉖		㉗	-
차기환류적립금	600	㉘		㉙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㉚	600	㉛	-
초과환류액	-	㉜	700	㉝(㉑-㉒)	-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㉞	△100(소멸)	㉟	300

→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8년 초과환류액(㉜)에서 공제하고, 남은 초과환류액은 이월하지 않고 소멸

→ 법인세법 제52조의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며 각 세법에 따라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합산(㉞+㉟)(단, ㉞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 '0으로 봄)하여 별지3호 서식(㉟)에 기재

(case2) 2017차기환류적립금 800,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700,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발생300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㉑	-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㉒	-
미환류소득		㉔		㉓	300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㉖		㉗	-
차기환류적립금	800	㉘		㉙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㉚	800	㉛	-
초과환류액	-	㉜	700	㉝(㉑-㉒)	-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㉞	100	㉟	300

→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8년 초과환류액(㉜)에서 공제

→ 법인세법 제52조의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며 각 세법에 따라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합산(㉞+㉟)하여 별지3호 서식(㉟)에 기재

(case3) 2017차기환류적립금 800, 법인세법상 미환류200,조특법상 미환류소득 발생300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㉑	-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㉒	-
미환류소득		㉔	200 → 0	㉓	300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㉕		㉔	-
차기환류적립금	800	㉖		㉕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㉗	800	㉖	-
초과환류액	-	㉘		㉗(㉑-㉒)	-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㉙	800	㉘	300

→ 법인세법 제52조의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며 각 세법에 따라 발생한 미환류소득을 합산(㉙+㉘)하여 별지3호 서식(㉚)에 기재

→ ㉔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 '0'으로 봄

<사례2>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발생(법인세법) + 2018년 초과환류액 발생(조특법)

(case1~3, 공통)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(㉔)은 조특법에 따른 2018년 초과환류액(㉕)에서 공제(조특령 §100의32<19>)

(case1) 2017차기환류적립금 500,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 700, 조특법상 초과환류액 700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㉕	700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㉔	500
미환류소득		㉑		㉓	-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㉒		㉖	-
차기환류적립금	500	㉒		㉖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㉒	500	㉖	
초과환류액	-	㉒	700	㉔(㉕-㉔)	200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㉒	Δ200(소멸)	㉓	Δ200(이월)

→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8년 초과환류액(㉒)에서 공제하고, 남은 초과환류액은 이월하지 않고 소멸

→ 법인세법 제52조의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하고, 2018년 조특법상 초과환류액(㉕)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(㉔)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이월

(case2) 2017차기환류적립금 800, 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700, 조특법상 초과환류액 600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㉕	600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㉔	700
미환류소득		㉑		㉓	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㉒		㉖	-
차기환류적립금	800	㉒		㉖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㉒	800	㉖	-
초과환류액	-	㉒	700	㉔(㉕-㉔)	Δ100 → 0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㉒	100	㉓	-

→ 법인세법 제52조의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

→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액(㉒)에서 공제된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잔액(㉒)은 별지3호 서식 ㉑에 기재하여 법인세 납부하고,

2018년 조특법상 초과환류액(㉕)을 초과한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(㉔)은 소멸 (즉, ㉔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'0'으로 봄)

(case3) 2017차기환류적립금800,법인세법상 초과환류액700,조특법상 초과환류액800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㉑	800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㉒	700
미환류소득		㉔		㉓	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㉕		㉔	-
차기환류적립금	800	㉖		㉕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㉗	800	㉖	-
초과환류액	-	㉘	700	㉗(㉑-㉒)	100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㉙	100	㉘	△100(이월)

→ 법인세법 제52조의2 서식과 조특법 제114호 서식 모두 작성

→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액(㉘)에서 공제된 2017년 차기환류적립금 잔액(㉙)은 별지3호
서식 ㉚에 기재하여 법인세 납부하고,
2018년 조특법상 초과환류액(㉗)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(㉒)을 공제 하고
남은 잔액은 이월

<사례3> 2017년 초과환류액(법인세법)이 발생한 경우

(case1~2, 공통) 2017년 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2018년 조특법에 따른 미환류소득(㉓)에서 공제

○(CASE1) 2018년도에 조특법상 미환류소득 700, 차기환류적립금 100 발생한 경우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㉑	-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㉒	
미환류소득	-	㉔		㉓	700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㉕		㉖	500
차기환류적립금	-	㉗		㉘	100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㉙		㉚	-
초과환류액	500	㉛		㉜(㉑-㉒)	-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㉞		㉟	100

→ 조특법에 따른 서식(114호)만 작성하고, ㉞의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㉟에 기재
 * ㉕의 금액은 ㉓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

○(CASE2) 2018년도에 초과환류액 700(조특법)이 발생한 경우

구 분	2017년 (법인세)	2018년 귀속 신고서식(개정)			
		법인세		조특법	
초과환류액	-	-		㉑	700
법인세법에 따른 초과환류 공제금액		-		㉒	-
미환류소득		㉔		㉓	-
이월된 초과환류액	-	㉕		㉖	500 → 기재×
차기환류적립금	-	㉗		㉘	-
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	-	㉙		㉚	-
초과환류액	500	㉛		㉜(㉑-㉒)	700
과세대상 미환류소득	-	㉞		㉟	△700(이월)

→ 조특법에 따른 서식(114호)만 작성하고, 2018년 조특법에 따른 초과환류액(㉑)은 이월
 * ㉕의 금액은 ㉓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